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1.04.04 - 2012.04.03
- 라. 집합투자업자: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부국증권, 현대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골든브릿지투자증권, 삼성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KTB투자증권, 애플투자증권, 비오에스증권, 한맥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부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신한은행, 제주은행, 금호종합금융, 수협중앙회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케이디비생명, 미래에셋생명, 한화증권, 흥국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1.05.26	1. 종류 A-u2 수익증권의 신설	제2조(용어의 정의) 9. <생략>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<신설>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10. <신설> 제39조(보수) ③ 10. <신설> 제40조(판매수수료) ③ 3. <신설> 제41조(환매수수료) ② 2. <신설>	엠브렐러 클래스II (종류 A-u2 수익증권) 신설, 관련 조항에 아래 내용 반영 < 종류 명칭 > 종류 A-u2 수익증권 < 가입자격 > 투자자격 제한없음 <판매수수료> 납입금액의 0.98% 이내 <환매수수료> 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 <보수>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80]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70]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50]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

			[0.20] (기타 관련 정보 변경)
2. 종류 A-u2 수익증권의 신설에 따른 전환관련 정보 변경	제51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 <생략>	제51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 <신설>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(종류 A-u2 수익증권), 관련 조항에 해당 정보 변경 <상세 내용 생략>	
3. 제3-2조(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) 신설	<신설>	제3-2조(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) ①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종류 A-u2 수익증권에서 그 외 종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하다. ② 수익증권의 전환 청구는 최초 매수일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각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. ③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 시, 전환 청구 수익증권의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-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을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의 차이만큼 전환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,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. 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	

			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전환 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.</p>
2011.08.23	<p>1. 종류 A-u 판매보수 인하 : 제39조 (보수)</p>	<p>제39조 (보수)</p> <p>5. 종류 A-u 수익증권</p> <p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80]</p> <p>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8.50]</p> <p>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50]</p> <p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0.20]</p>	<p>제39조 (보수)</p> <p>5. 종류 A-u 수익증권</p> <p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80]</p> <p>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50]</p> <p>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50]</p> <p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0.20]</p>
	<p>2.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관련 정보 변경 : 제3-2조(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)</p>	<p>제3-2조(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)</p> <p>①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종류 A-u2 수익증권에서 그 외 종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하다.</p> <p>② 수익증권의 전환 청구는 최초 매수일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각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.</p> <p>③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류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</p>	<p>제3-2조(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)</p> <p>①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하다.</p> <p>② 수익증권의 전환 청구는 최초 매수일로부터 제41조에 따른 각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.</p> <p>③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 시, 전환 청구 수익증권의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-u 또</p>

	<p>청구 시, 전환 청구 수익증권의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-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을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의 차이만큼 전환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,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.</p> <p>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 전환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전환 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.</p>	<p>는 A-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을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의 차이만큼 전환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,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.</p> <p>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종류 A-u 또는 A-u2 수익증권으로 전환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전환 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.</p>
<p>3. 수익자총회 관련 조항 정정 : 제37조 (수익자총회)</p>	<p>제37조 (수익자총회)</p> <p>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</p>	<p>제37조 (수익자총회)</p> <p>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</p>

		의할 수 있다. 1.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해 당 투자신탁의 종류 변경 2.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 자신탁으로의 변경 및 전환 <생략>	<현행과 동일>
--	--	--	--------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2,000,000 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

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